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4일, 김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4.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원회(2026.4.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현의원)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

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첫째, 안 제32조제1항의 제재 처분 상한 상향과 관련하여, 현행 최대 10년의 참여제한 한도도 사실상 연구자의 학문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이를 20년으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 상한 역시 30배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는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실제 제재처분 현황과 법률상 최대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현행법에 따른 참여제한 처

분 1,034건 중 8년 초과 10년 이하의 제재는 단 1건(0.1%)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887건(85.8%)이 2년 이하의 처분을 받았음. 제재부가금 처분 역시 총 415건 중 1배 이하가 411건(9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배를 초과하여 부과된 사례는 전무함.

셋째, 안 제36조의2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조치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실질적 보완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¹⁾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관 행정기관은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도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아울러 실무상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절차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함. 실제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함.

넷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객관적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사항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